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8월 8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8월 8일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과의 배치되는 조례내용 개정

4. 주요골자

- 장학생의 의무근무기간 조정 : 특별훈련기간의 2배

⇒ 훈련기관과 동일한 기간(극내 일과후의 특별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5할)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부분에 대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배치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
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의 조문을 “훈련기간과 동일한기간(국내
에서 일과후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는 훈련기간의 5할)”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기능과 역할의 증대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주봉사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지식과 우수한 직무수행능력을
현실에 접목시키고자 장학생의 의무기간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